



대학혁신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22. 4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혁신지원단

- 제 1조 (목적)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수립, 성과관리, 규정(지침)마련 등 사업관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의 운영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- 제 2조 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혁신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위원, 외부전문가 및 학생대표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고,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 3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사업비 운영의 집행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3. 사업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- 제 4조 (회의) ① 운영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 5조 (소관사항) ① 혁신지원단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원회’라 한다)를 두며, 혁신지원단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② 혁신지원 사업비의 객관성, 정확성, 신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관리위원회(이하 ‘관리위원회’라 한다)를 두며, 혁신지원단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③ 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그와 부수된 제반사항들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지원단 내에 사업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, 혁신지원단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혁신지원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제 6조 (사무관장)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혁신지원단에서 관장하며,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혁신지원단 직원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